

포항가속기연구소 규정

제정 1991. 4.15	개정 1999. 5. 4	개정 2008. 3.16	개정 2016.10.17
개정 1995. 8.14	개정 2000. 7.10	개정 2010. 1.19	개정 2017. 9.15
개정 1996. 8.16	개정 2001. 9. 1	개정 2013. 5.10	
개정 1996.11.21	개정 2003. 2.20	개정 2013.10.23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가속기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수탁연구기관인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기본 조직

제2조(조직) ① 연구소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1과 같다.

② 각 부서의 하부조직 및 정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.

제3조(소장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 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, 필요시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④ 소장은 국유자산 관리위탁 계약에 의거한 방사광가속기 시설 및 기자재의 계약 당시의 상태 유지를 포함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4조(부소장) ① 소장을 보좌하고, 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둔다.

②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단위부서의 장) 연구소에는 소장, 부소장 산하에 가속기연구단, 방사광연구단, 기획실, 행정지원부, 방사선안전팀을 두며, 각 부서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 장 연구소원

제6조(연구소원) ① 연구소원은 연구원(전임포함), 기술원(전임포함), 행정원, 위촉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필요시 연구소원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.

제7조(임면) ① 연구원, 기술원 및 행정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전임연구원, 전임기술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소장은 직무상 필요시 연구소의 운영자문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고문(비상근 포함), 보좌역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④ 소장은 방사광가속기 유지·보수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촉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⑤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대학 관련 제규정 및 연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다.

제 4 장 주 요 업 무

제8조(연구소 업무) ① 연구소는 수탁연구기관인 대학에 부여된 방사광가속기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방사광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, 행정적 지원
2. 방사광가속기의 가동 및 운전
3. 방사광가속기 장치의 성능향상, 국산화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연구
4.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의 활용
5. 방사광가속기 설비, 시설의 유지 보수
6. 방사광 이용자의 육성 및 홍보
7. 국제협력을 포함한 가속기 및 빔 광학 등 대·내외 공동연구
8. 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
9.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한 산업융합기술 지원 및 육성
10. 설비, 시설 및 기자재의 자산 관리 등

②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학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업무처리기준)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1. 예산 및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
2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 관련 주요 사업의 기획, 시행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중요한 인력운영 및 지침 설정에 관한 사항

6. 채무부담 발생 및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

7. 기타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

제10조(협력사항) 소장은 상호 협의 하에 대학, (주)포스코 및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인원, 시설,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 5 장 위 원 회

제11조(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) 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인 '방사광가속기등 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' 제3조의 심의사항 등 방사광가속기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(연구소내 위원회)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, 소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(자문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국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자산과 예산 회계

제14조(자산관리) 연구소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에 의거한 자산의 취득, 보관,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주의 의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국유재산법령 및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을 우선 적용하되, 필요시 대학 자산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예산 및 회계) ① 연구소의 예산은 정부출연금(연구개발사업비 포함) 및 기타 수입으로 편성하되, 위탁재산의 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 및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
제 7 장 기 타

제1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,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, 지침 등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채용된 연구소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7월 1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2월 2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(조직 및 기능) 제2항은 200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월 1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전면 개정, 시행한다.

(별표 1) 조직도(개정: 2017.9.15)

포항가속기연구소 조직

